둔내 가온하이츠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08.19.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6.8.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2016.8.12., 타법개정] 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위탁자 (주)더존하우스와 수탁자 대한토지신탁(주)가 2016년 5월 26일자로 체결한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되는 것입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통한 사전 체험을 권함)
■ 주택의 공급대상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9) 현재 주택의 공급지역을 횡성군 및 강원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 단, 동일순위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횡성군)의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가점제 및 가점제 적용비율
- 본 아파트는 2007.09.0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민영주택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2항에 의거, 제1순위에서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40%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전매제한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 계약체결 가능일로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 최초 주택공급 계약체결 가능일 : 2016.09.06 (단, 청약신청자가 없을 경우 : 2016.08.27)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의 표기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5항에 따라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02.27 개정)에 따른 주택청약제도 전부개정조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순위체계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발생 요건 완화 : 기존 "1, 2, 3순위" 방식이 "1,2순위"방식으로 간소화 되었습니다.
-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 시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 : 기존 "무주택세대주 "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1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 가능)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됨.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에 청약 가능 / 주택규모변경 기간(2년) 및 주택규모 상향 시 청약제한 기간(3개월) 폐지
-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 시 감점제도 폐지 : 주택소유 수에 따른 감점 폐지
-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 기존 "60㎡이하의 주택으로서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에서 "60㎡이하의 주택으로서 공시가격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로 변경
■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9) 현재 청약신청자나 청약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만65세 이상인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경쟁이 있는 경우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에게 우선 배정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른 층을 배정 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횡성군 허가민원과 – 46656호(2016.8.19)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578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1층 지상13~16층 1개동 총 152세대
[특별공급 40세대 포함(일반 특별공급 13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3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3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1세대 포함)]
■ 공급대상

구분	아파트 코드 및 주택관리 번호	타입	주택형(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계약면적(㎡) 세대별 공급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공용면적 기계/전기 및 부대시설	소계	합계	세대당 대지 지분(㎡)	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소계	일반공급	합계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수
민영주택	2016000920-01	59A	59.9584A	59.9584	22.4622	82.4206	2.3500	2.3500	84.7706	44.1595	1	1	1	0	3	11	14	1
	2016000920-02	59B	59.9905B	59.9905	23.0932	83.0837	2.3512	2.3512	85.4349	44.1831	2	2	2	0	6	23	29	2
	2016000920-03	59C	59.9872C	59.9872	22.2854	82.2726	2.3511	2.3511	84.6237	44.1806	3	3	3	0	9	21	30	2
	2016000920-04	84A	84.8439A	84.8439	30.5683	115.4122	3.3253	3.3253	118.7375	62.1794	6	6	6	1	19	45	64	4
	2016000920-05	84B	84.7432B	84.7432	30.6498	115.3930	3.3213	3.3213	118.7143	62.1672	1	1	1	0	3	12	15	1

■ 주택형 약식표기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59.9584A	59.9905B	59.9872C	84.8439A	84.7432B
약식표기(타입)	59A	59B	59C	84A	84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약식으로 표기하였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수,원)

타입	동(호라인)	공급세대수	층구분	해당세대수	분양가격 대지비	분양가격 건축비	분양가격 합계	계약금(10%) 계약 시	계약금(10%) 계약 후 1개월	중도금(60%) 1회(10%) 2016-12-15	2회(10%) 2017-03-15	3회(10%) 2017-06-15	4회(10%) 2017-10-15	5회(10%) 2017-12-15	6회(10%) 2018-03-15	잔금(30%) 입주지정일
59A	101동(1호라인)	14	1층	1	7,760,000	127,170,000	134,930,000	6,746,500	6,746,500	13,493,000	13,493,000	13,493,000	13,493,000	13,493,000	13,493,000	40,479,000
			2층	1	7,760,000	128,670,000	136,430,000	6,821,500	6,821,500	13,643,000	13,643,000	13,643,000	13,643,000	13,643,000	13,643,000	40,929,000
			3층	1	7,760,000	130,570,000	138,330,000	6,916,500	6,916,500	13,833,000	13,833,000	13,833,000	13,833,000	13,833,000	13,833,000	41,499,000
			4층	1	7,760,000	131,770,000	139,530,000	6,976,500	6,976,500	13,953,000	13,953,000	13,953,000	13,953,000	13,953,000	13,953,000	41,859,000
			5~13층	9	7,760,000	133,270,000	141,030,000	7,051,500	7,051,500	14,103,000	14,103,000	14,103,000	14,103,000	14,103,000	14,103,000	42,309,000
			최상층	1	7,760,000	140,670,000	148,430,000	7,421,500	7,421,500	14,843,000	14,843,000	14,843,000	14,843,000	14,843,000	14,843,000	44,529,000
59B	101동(6호라인)	16	1층	1	7,770,000	133,330,000	141,100,000	7,055,000	7,055,000	14,110,000	14,110,000	14,110,000	14,110,000	14,110,000	14,110,000	42,330,000
			2층	1	7,770,000	134,830,000	142,600,000	7,130,000	7,130,000	14,260,000	14,260,000	14,260,000	14,260,000	14,260,000	14,260,000	42,780,000
			3층	1	7,770,000	136,730,000	144,500,000	7,225,000	7,225,000	14,450,000	14,450,000	14,450,000	14,450,000	14,450,000	14,450,000	43,350,000
			4층	1	7,770,000	137,930,000	145,700,000	7,285,000	7,285,000	14,570,000	14,570,000	14,570,000	14,570,000	14,570,000	14,570,000	43,710,000
			5~15층	11	7,770,000	139,430,000	147,200,000	7,360,000	7,360,000	14,720,000	14,720,000	14,720,000	14,720,000	14,720,000	14,720,000	44,160,000
			최상층	1	7,770,000	146,830,000	154,600,000	7,730,000	7,730,000	15,460,000	15,460,000	15,460,000	15,460,000	15,460,000	15,460,000	46,380,000
	101동(7호라인)	13	1층	1	7,770,000	133,330,000	141,100,000	7,055,000	7,055,000	14,110,000	14,110,000	14,110,000	14,110,000	14,110,000	14,110,000	42,330,000
			2층	1	7,770,000	134,830,000	142,600,000	7,130,000	7,130,000	14,260,000	14,260,000	14,260,000	14,260,000	14,260,000	14,260,000	42,780,000
			3층	1	7,770,000	136,730,000	144,500,000	7,225,000	7,225,000	14,450,000	14,450,000	14,450,000	14,450,000	14,450,000	14,450,000	43,350,000
			4층	1	7,770,000	137,930,000	145,700,000	7,285,000	7,285,000	14,570,000	14,570,000	14,570,000	14,570,000	14,570,000	14,570,000	43,710,000
			5~12층	8	7,770,000	139,430,000	147,200,000	7,360,000	7,360,000	14,720,000	14,720,000	14,720,000	14,720,000	14,720,000	14,720,000	44,160,000
			최상층	1	7,770,000	146,830,000	154,600,000	7,730,000	7,730,000	15,460,000	15,460,000	15,460,000	15,460,000	15,460,000	15,460,000	46,380,000
59C	101동(5,8호라인)	30	2층	2	7,760,000	134,840,000	142,600,000	7,130,000	7,130,000	14,260,000	14,260,000	14,260,000	14,260,000	14,260,000	14,260,000	42,780,000
			3층	2	7,760,000	136,740,000	144,500,000	7,225,000	7,225,000	14,450,000	14,450,000	14,450,000	14,450,000	14,450,000	14,450,000	43,350,000
			4층	2	7,760,000	137,940,000	145,700,000	7,285,000	7,285,000	14,570,000	14,570,000	14,570,000	14,570,000	14,570,000	14,570,000	43,710,000
			5~15층	22	7,760,000	139,440,000	147,200,000	7,360,000	7,360,000	14,720,000	14,720,000	14,720,000	14,720,000	14,720,000	14,720,000	44,160,000
			최상층	2	7,760,000	146,840,000	154,600,000	7,730,000	7,730,000	15,460,000	15,460,000	15,460,000	15,460,000	15,460,000	15,460,000	46,380,000
84A	101동(3,4호라인)	32	1층	2	10,970,000	181,170,000	192,140,000	9,607,000	9,607,000	19,214,000	19,214,000	19,214,000	19,214,000	19,214,000	19,214,000	57,642,000
			2층	2	10,970,000	183,270,000	194,240,000	9,712,000	9,712,000	19,424,000	19,424,000	19,424,000	19,424,000	19,424,000	19,424,000	58,272,000
			3층	2	10,970,000	185,370,000	196,340,000	9,817,000	9,817,000	19,634,000	19,634,000	19,634,000	19,634,000	19,634,000	19,634,000	58,902,000
			4층	2	10,970,000	187,570,000	198,540,000	9,927,000	9,927,000	19,854,000	19,854,000	19,854,000	19,854,000	19,854,000	19,854,000	59,562,000
			5~15층	22	10,970,000	189,670,000	200,640,000	10,032,000	10,032,000	20,064,000	20,064,000	20,064,000	20,064,000	20,064,000	20,064,000	60,192,000
			최상층	2	10,970,000	201,370,000	212,340,000	10,617,000	10,617,000	21,234,000	21,234,000	21,234,000	21,234,000	21,234,000	21,234,000	63,702,000
	101동(9,10호라인)	32	1층	2	10,970,000	187,670,000	198,640,000	9,932,000	9,932,000	19,864,000	19,864,000	19,864,000	19,864,000	19,864,000	19,864,000	59,592,000
			2층	2	10,970,000	189,770,000	200,740,000	10,037,000	10,037,000	20,074,000	20,074,000	20,074,000	20,074,000	20,074,000	20,074,000	60,222,000
			3층	2	10,970,000	191,870,000	202,840,000	10,142,000	10,142,000	20,284,000	20,284,000	20,284,000	20,284,000	20,284,000	20,284,000	60,852,000
			4층	2	10,970,000	194,070,000	205,040,000	10,252,000	10,252,000	20,504,000	20,504,000	20,504,000	20,504,000	20,504,000	20,504,000	61,512,000
			5~15층	22	10,970,000	196,170,000	207,140,000	10,357,000	10,357,000	20,714,000	20,714,000	20,714,000	20,714,000	20,714,000	20,714,000	62,142,000
			최상층	2	10,970,000	207,870,000	218,840,000	10,942,000	10,942,000	21,884,000	21,884,000	21,884,000	21,884,000	21,884,000	21,884,000	65,652,000
84B	101동(2호라인)	15	1층	1	10,970,000	176,720,000	187,690,000	9,384,500	9,384,500	18,769,000	18,769,000	18,769,000	18,769,000	18,769,000	18,769,000	56,307,000
			2층	1	10,970,000	178,870,000	189,840,000	9,492,000	9,492,000	18,984,000	18,984,000	18,984,000	18,984,000	18,984,000	18,984,000	56,952,000
			3층	1	10,970,000	180,970,000	191,940,000	9,597,000	9,597,000	19,194,000	19,194,000	19,194,000	19,194,000	19,194,000	19,194,000	57,582,000
			4층	1	10,970,000	183,170,000	194,140,000	9,707,000	9,707,000	19,414,000	19,414,000	19,414,000	19,414,000	19,414,000	19,414,000	58,242,000
			5~14층	10	10,970,000	185,270,000	196,240,000	9,812,000	9,812,000	19,624,000	19,624,000	19,624,000	19,624,000	19,624,000	19,624,000	58,872,000
			최상층	1	10,970,000	196,970,000	207,940,000	10,397,000	10,397,000	20,794,000	20,794,000	20,794,000	20,794,000	20,794,000	20,794,000	62,382,000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공통 유의사항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0 .3025 또는 ㎡÷ 3.3058)
- 2009. 4.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에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 되어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각 주택형별 마이너스옵션선택은 청약당첨자 분양계약 시 선택사항임.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라인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 · 호수를 추첨하며 추첨결과에 따라 동 · 호수가 확정됨.
- 공동주택 단위세대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부대시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단, 소숫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필로티 및 대피소가 있는 동은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본 아파트의 분양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전액 무이자 지원예정임(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당사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 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함.(단, 당사는 당사의 알선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 시 연체료 부과되며 계약조건에 의거 계약해지 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 공통사항 [일반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회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1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 가능)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단, 철거주택 소유자인 경우 무주택세대주, 청약통장가입 요건 등 일부항목 적용 배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①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①+② 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 참조)
⇒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하는 분만이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①과 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함)
※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주택공급 신청 가능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가 청약 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공급신청자는 동일함) ※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사항
-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9)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및 제28호) 및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전용면적85㎡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 총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이상이고, 신청하기 전까지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하신 분,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선납도 인정함
- 기타 특별공급 신청자(일반(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제외) / 신혼부부 / 다자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전용면적85㎡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 총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이상이고, 신청하기 전까지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하신 분,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선납도 인정함
※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 분	횡성군 및 강원도 거주자	비 고
금 액	2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참조

▶ 당첨자 선정(공고) 관련 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 · 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 · 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5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 · 호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 · 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이 다소 지연 및 변경될 수 있음.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기관추천 일반 특별공급, 제40조에 해당하는 다자녀 특별공급, 제41조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6조에 해당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하나, 추첨일의 상황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임의로 추첨순서를 변경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특별공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 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 · 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처리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세대수)

구분 \ 타입	계	59A	59B	59C	84A	84B
일반 특별공급(10%)	13	1	2	3	6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10%)	13	1	2	3	6	1
신혼부부 특별공급(10%)	13	1	2	3	6	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3%)	1	0	0	0	1	0
합계	40	3	6	9	19	3

■ 일반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13 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 또는 인증서를 받은 자

추천 대상자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통장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 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중소기업 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박사학위 취득 영구 귀국자, 우수선수 등	입주자 저축에 해당요건을 갖춘 분

-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 제13호, 제14호 및 제36조 제1호는 제외. • 대상기준 및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한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
- 기타 : 해외장기취업 귀국 근로자, 해외장기거주 귀국공무원, 영구 귀국 박사학위 취득자, 올림픽/국제기능올림픽/세계선수권대회 3위 이상 입상자,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납북피해자, 일본 위안군 피해자 등
▶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 일반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
※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 · 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일반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13세대 /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9) 현재 횡성군 또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9)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신청 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 견본주택 비치)

평점요소	총배점	배 점 기 준 기분	점수	비 고
계	65			
미성년 자녀수(1)	5	4자녀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0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공급신청자 나이가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규정에 따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공급신청자 나이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기간(5)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 · 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규정 적용 (국토교통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13 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9) 현재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재혼일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9)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 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 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여야 함.

구 분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고시) 3인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816,665원 이하	5,393,154원 이하	5,475,403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779,998원 이하	6,471,785원 이하	6,570,484원 이하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N–5)} * N → 6인 이상 가구원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19세 이상의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이며,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19세 이상의 직계존 · 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신혼부부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세 입증 제출서류	발 급 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 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 지급조서(직인 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접수장소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9)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9)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2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의 경우, 본청약을 포함한다)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 1세대 / 전체 공급세대수의 3%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9) 현재 횡성군과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무주택세대주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함.(견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9)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9)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2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의 경우, 본청약을 포함한다)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 1세대 / 전체 공급세대수의 3%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9) 현재 횡성군과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무주택세대주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함.(견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일반공급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2016.08.25(목) 08:00 ~ 17:30, 2016.08.26(금) 08:00 ~ 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www.kbstar.com),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대상	1) 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2) 2순위 : 주택청약 참가은행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 이상이어야 함)	
이용방법 및 절차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전체서비스 ⇒ 청약 ⇒ 인터넷 청약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9) 현재 횡성군 및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횡성군) 거주자가 우선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9)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과거 당첨사실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함(2012.09.25.「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의거)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2항에 의거, 제1순위에서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40%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따른 1순위자 중 1가구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도 1순위에 청약이 가능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가 소명기간 내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지역	순위	신청자격 및 청약관련예금
민영주택	횡성군 · 강원도 거주자	1순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08.19) 현재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추첨제 적용(청약통장과 관계없음)

※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 분	횡성군 및 강원도 거주자	비 고
금 액	2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참조

▶ 신청접수방법
-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당해 주택건설지역(횡성군)과 강원도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 청약순위 별로 청약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 접수를 받음
-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동일 순위 경쟁자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9) 현재 횡성군 주택건설지역 거주 신청자가 강원도 지역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강원도 거주 신청자는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청약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청약신청 접수마감시간은 17:30이며 이는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접수중이라도 접수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 바람.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제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재당첨제한 등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시어 향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청약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및 "주택소유에 따른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청약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 청약가점제 관련 유의사항 : 청약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이상 ~ 5년미만	10	12년이상 ~ 13년미만	26	
		5년이상 ~ 6년미만	12	13년이상 ~ 14년미만	28	
		6년이상 ~ 7년미만	14	14년이상 ~ 15년미만	30	
		7년이상 ~ 8년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월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총점	84					
비고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청약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9)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에 따른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9)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2순위 청약신청금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 혹은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 · 지점 창구 신청접수

주택형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전 주택형	100만원	• 인터넷청약자 : 주택청약 참가은행(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에 입출금통장 개설 후 2순위 청약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람.(인터넷 청약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창구청약자 : 가능한 횡성군, 강원도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2016.09.01) 익영업일부터 평일 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구 분	환 불 장 소
인터넷 청약자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환불
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신 청 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에 자동환불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받아야 함

▶ 환불대상 : 2순위 청약자(당첨자 포함) ▶ 자동환불 미신청자 창구환불 시 구비사항
- 본인, 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본인확인증표(※은행창구 청약신청 시와 동일), 신청 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본인확인증표(※은행창구 청약신청 시와 동일), 위임장
▶ 2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2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 · 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III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횡성군 / 강원도	2016.08.24(수요일) 10:00~14:00	견본주택 방문접수 (인터넷 신청 불가)	• 횡성 둔내 가온하이츠 견본주택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18번지)
일반공급	1순위		2016.08.25(목요일) 08:00~17:30	인터넷 신청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www.APT2you.com
	2순위		2016.08.26(금요일) 08:00~17:30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 가입자(www.APT2you.com)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인터넷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 신청일 09:00~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2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 · 지점 창구에서 가능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 시 구비사항 (접수시간 : 09:00~16:00)

구 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 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2순위 :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 · 지점 비치) ▶ 청약통장(1순위 신청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 신청자에 한함) 또는 본인, 배우자의 서명 ▶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1통) ▶ 청약 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O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O		인감도장	본인	
	O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및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기관추천	O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상기 특별공급 공통서류 외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증명서) 1통(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복지카드등 기타서류 불가)
다자녀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O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O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 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인장	대리인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I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당사 견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 함)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에서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 · 호 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세대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일반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 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결정함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횡성군 주택건설지역 거주 신청자가 우선시되며, 강원도 지역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동 · 호수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 일시 : 2016.08.24(수) 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일 시 : 2016.09.01(목) • 확인방법 : 금융결제원홈페이지 (www.apt2you.com)	• 일시 : 2016.09.06(화) ~ 2016.09.08(목) (3일간,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일시 : 2016.09.01(목)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게재		

- 특별공급 동 · 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 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 · 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당첨자 선정 이후 임의 분양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 ·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자 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통지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 · 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당첨자는 통보하는 동, 호수 배정일 및 계약체결일 불참 시 예비당첨자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일부터 2일 이내에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동 ·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위 당첨자 발표 장소에서 재확인 하시기 바람.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전체서비스 → 청약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 → 당첨사실조회
	이용기간	2016.09.01 ~ 2016.09.10 (10일간)	
전화 / ARS	이용방법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 [서비스코드: 9→1→3]	전자금융 공동망(☎1369) [서비스코드:5#]
	이용기간	2016.09.01 ~ 2016.09.10 (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주택청약신청시 SMS 당첨 통지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6.09.01 (08:30~) (※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V 계약체결

■ 계약기간 및 장소
- 계약기간(정당 당첨자) : 2016.09.06(화) ~ 2016.09.08(목) [3일간 / 시간 : 10:00 ~ 16:00]
- 계약장소 : 횡성 둔내 가온하이츠 견본주택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18번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판명시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됨.
■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해당자)	구 비 서 류
공통		o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 확인 가능한 신분증
		o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1통
		o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포함), 주민등록초본
		o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o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o	• 대리계약 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인감도장(대리인),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특별공급	기관 추천/ 다자녀/노부모		o	• 주민등록초본(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 시)
	신혼부부	o		• 혼인관계증명서
			o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o	• 임신증명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일반공급			o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 시)
			o	• 주민등록초본(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이상 가입하고 그거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시) • 군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1부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o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조건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가 소명기간 내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 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 · 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됨.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중도금/잔금	KB국민은행	593101–04–093657	대한토지신탁(주)

■ 계약자 대출안내(본 아파트는 회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 관련,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분양대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3항 27호)
- 입주지정개시일전 입주자에서 시공사가 약 1~2개월 전에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토록 할 예정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위생기구공사 등의 상태를 확인하기위한 사전방문실시)
■ 입주예정일 : 2018년 06월 예정(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별도 분양시설) 등
■ 하자 등에 따른 보수책임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적용됨.

VI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
■ 발코니 확장공사비

(단위 : 원)

타입	확장범위	확장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합 계	납부시기 계약금(계약 시)	잔금(입주지정일)
59A	거실, 주방, 침실2, 침실3	6,100,000	610,000	6,710,000	1,000,000	5,710,000
59B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7,640,000	764,000	8,404,000	1,000,000	7,404,000
59C	거실, 주방, 침실2, 침실3, 현관	7,200,000	720,000	7,920,000	1,000,000	6,920,000
84A	거실, 주방, 침실2, 침실3, 다목적실, 드레스룸	7,900,000	790,000	8,690,000	1,000,000	7,690,000
84B	거실, 주방, 침실2, 침실3	7,800,000	780,000	8,580,000	1,000,000	7,580,000

■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KB국민은행	593101–04–093644	대한토지신탁(주)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음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210.02.18 개정 · 시행)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임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에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은 통합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
- 발코니 확장공사는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등의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고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전실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또는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관계 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 · 절약 설계기준,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비내력벽의 철거 및 용도변경, 개축 · 재축 · 대수선, 리모델링 등 입주 후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인접 입주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함)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의 입주자가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확장되지 아니한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발코니샤시 설치 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미확장세대의 발코니사용에 따른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공통사항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의'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 · 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 · 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구 분	품 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기본제공품목
일괄선택 (개별선택 불가)	문	문틀(상부마감판 포함), 문짝(목재문합문 포함), 문선, 목재몰딩, 디지털도어록(현관)	욕실문틀 하부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방화문틀 및 문짝(도장마감), 외부창호 (일반손잡이 설치), 실외기그릴창, 대피공간창호
	바닥	거실바닥(강마루), 발코니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시멘트몰탈, 걸레받이, 현관 (바닥재, 마루귀틀, 디딤판)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초배포함), 거실(아트월, MDF판, 타일 등), 주방벽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경량벽체, 목조칸막이벽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발코니 벽도장
	천장	벽지(초배포함), 등박스, 반자돌림	경량천정틀 및 석고보드, 발코니 천정도장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 (매입등기구 제외)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욕실	천정재(천정틀 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악세사리류, 수전류, 샤워부스, 욕실장, 비데(욕실1), 욕실팬, 욕실벽 및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비상콜(욕실2)	벽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주방가구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레인지후드, 주방TV 등) 기기류(악세사리류), 수전류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정보통신 배관, 배선 및 배선기구
	일반가구 및 기타	신발장, 드레스룸가구, 화장대, 반침가구, 전신거울 등	–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원)

타 입	59A	59B	59C	84A	84B
기본선택(마이너스옵션금액)	18,062,474	18,207,792	18,030,040	25,275,271	25,271,067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등록세 통합)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함.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옵션을 신청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됨.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 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람.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 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 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VII 유의사항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소유에 따른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시행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 · 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m2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 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함)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단, 2007. 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 특별공급 제외)시 적용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착오기재 소명 여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단,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외)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일반공통 유의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숙지해야 할 사항은 팸플렛, 견본주택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자는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로 인해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 · 허가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 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 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 · 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기 청약자격이 전산 등록된 분 중 주민등록사항 등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신청일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음.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2016년 06월 30일 승인된 사업승인변경도면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본 아파트는 판매 시점과 그에 따른 주택시장동향에 따라 분양조건(할인분양 등)의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사전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주변 환경, 개발계획 등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가능 하오니, 당해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해야 함.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일부 세대는 공사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적용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관련 법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각종 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동질, 동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팸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은 전시품목임.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등은 표현되지 않음.
- 견본주택 건립 시 미관 및 성능 향상 등을 위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된 사항은 추후 견본주택기준으로 사업계획승인변경(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신고) 처리될 예정임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각종 인쇄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및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 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각종 인쇄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의 사유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의 평면도, 조감도, 배치도, 이미지 컷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세대내부에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조감도 및 배치도 인근의 주변 도로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 내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공간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광고 및 홍보인쇄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추진(예정)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설계 및 시공관련 일반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옥탑디자인, 조경, 측벽 시공사 BI, CI 사인(측벽BI, CI사인 설치 시),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인허가관청과의 협의 및 심의과정,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엘리베이터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경관조명,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개시 시점에 현장 여건에 따라 세부 물량, 품목 등이 계정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견본주택이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동출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그 크기는 동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출입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른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식수 및 수량,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하여 견본주택에 비치한 건축도서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일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소음영향평가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방음벽이 설치될 경우 이로 인해 일부세대의 일조 및 조망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으며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주택형별 적용되는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설물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사업승인(변경)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음. • 커뮤니티시설의 형태, 내부구조, 가구 및 집기류는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전 ·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부,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주택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아파트 저층부 외벽마감은 인허가된 당사의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함.
- 각 방송국의 사업승인허가조건에 따라 준공 후 무선통신 및 TV수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옥탑층에 이동중계국 안테나를 설치 운영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입주민은 어떠한 민원제기나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증감(단열성능보완등)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치수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으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의 전실 및 홀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청약 및 계약 전 비치된 건축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동 · 라인에 따라 창 실의 방향이 다를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비치된 건축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및 거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또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실시공 시 세대 내 욕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라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당 아파트의 입주는 엘리베이터 이동을 기본으로 하며, 사다리차 이동을 하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사 시 소화시스템은 견본주택에 대한 사전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변경으로 인하여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고, 기능적 · 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분양자는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발코니 관련 유의사항
- 전 · 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발코니 미확장 세대는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확장 세대와 비교하여 부분적으로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이를 인지하고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후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발코니 확장선택 시 미확장되는 발코니를 제외하고는 수전 등 별도의 배수설비를 시공하지 않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에 따라 이중샤시,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발코니 내 대피공간은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시 확장부위의 외부샤시는 이중창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환경권 관련 유의사항
- 각 세대 배치에 따른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하여 조망권, 일조량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 및 비치된 건축도서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단지 내외 도로, 차량 진출입구, 비상차로, 보행자 출입구, 부대 복리시설 등에 인접한 동의 일부 세대는 차량, 보행자 등에 의하여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 일조권, 조망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차량전조등 및 야간조명 효과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탑, D/A)로 인하여 인접한 저층세대는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쓰레기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의 인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으로 인하여 필로티 옆 및 상부층 세대는 외부에서 통행에 의한 소음 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별 현관 주변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비치된 건축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형토지신탁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시행자인 (주)더존하우스가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하여 진행하는 분양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주)더존하우스이고, 티에치건설(주)은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의 의무를 부담하며, 대한토지신탁(주)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함. • 대한토지신탁(주)가 지정한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함.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오시공, 미시공, 사용승인 전에 발생한 하자 포함)은 위탁자 (주)더존하우스 및 시공사 티에치건설(주)이 연대하여 책임지며, 매수인은 대한토지신탁(주)에게 하자보수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신탁해지,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주)더존하우스]와 수탁자[대한토지신탁(주)]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 ·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 · 포괄적으로 이전됨
- 개별 분양세대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 ·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더존하우스]에게 면책적 · 포괄적으로 이전됨 • 매수인이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음
- 본건 공급대상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건축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 · 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 · 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VIII 기타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5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감리금액	항 목	공 종	금 액(원)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979,244,472	
	기간이자	1,139,885,974	
	그 밖의 비용	107,604,363	
	소 계	2,226,734,809	
공사비	토목	1,355,726,644	
	건축	12,954,721,260	
	기계설비	1,460,013,308	
	그 밖의 공종	2,549,229,586	
	그 밖의 공사비	1,911,922,190	
	소 계	20,231,612,988	
간접비	설계비	234,000,000	
	감리비	357,000,000	
	부대비	1,500,000,000	
	소 계	2,091,000,000	
그 밖의 비용		2,029,153,143	
합 계		26,578,500,940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의거)
※ 상기 항목별 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사전 추정가격으로 준공 시 소요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의 영업비밀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3항 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분	적용 여부	구분	적용 여부
고기밀창호	적용	고효율조명기구(지하주차장에 한함)	해당사항없음
고효율기자재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단위세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에 한함)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절수설비	적용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건축감리	전기 · 정보통신감리	소방감리
회 사 명	㈜형제케이종합건축사사무소	㈜극동전력	㈜한성기술단
감리금액	₩299,000,000원	₩25,000,000원	₩33,000,000원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16-101-0013100호	일백팔십칠억오천육백구십만일천원정 ₩ 18,756,901,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1. 보증기간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 부터 소유권 보존 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2. 보증사고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제4호) :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3조) :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4.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기타 마감재공사비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3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
상호	대한토지신탁(주)	티에치건설(주)	㈜더존하우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아셈타워 26층)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경강로 4517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경강로 417
법인등록번호	110111–1492513	144611–008056	145111–0013195

▣ 홈페이지 : http://gaonheights.co.kr ▣ 견본주택 위치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18번지
▣ 분양문의 : ☎ 033–345–5580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시행 대한토지신탁(주) DAEHAN REAL ESTATE TRUST CO., LTD • 시공 티에치건설|주| TH CONSTRUCTION CO., LTD

문의 033) 345-5580